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4.

발의자 : 송옥주 · 유승희 · 조배숙  
김경진 · 김철민 · 박정  
전재수 · 김상희 · 장정숙  
신창현 · 김병욱 · 정성호  
이재정 · 이철희 · 박남춘  
박주민 · 표창원 · 정춘숙  
박경미 · 서형수 · 권미혁  
의원(2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7년 2월 발표한 ‘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’ 보고서(PwC)에 따르면,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.7%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.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.

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‘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’에 따르면,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.6%에서 2016년 26.4%로 소폭 줄었지만,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.6%에서 201

6년 41.0%로 늘어,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.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.

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‘적극적 고용개선조치’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.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·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,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‘적극적 고용개선조치’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·직급뿐 아니라,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(안 제17조의3).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직종별”을 “직종별·고용형태별”로, “비율이”를 “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”을 “직급별·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”를 “직종별·직급별·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근로자”를 “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>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<u>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</u>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 계획과 남녀 <u>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, 제출 시기, 제출 절차 등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직종별·직급별·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근로자 현황, 남녀 근로자 임금</u>-----</p> <p>-----.</p>
--	---